

식품위생법 개정 내용에 대한 이해

작년 말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음식점 쌀 원산지표시제는 내년 1월 1일부터, 음식점 식육(쇠고기) 원산지표시제는 올해 1월 1일부터 연면적 90평(300m²) 이상인 음식점부터 실시된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통해 올해부터 농민이 직접 가공·제조한 식품과 음식의 약리적 기능 표시가 전면 허용된다.

이처럼 한농연이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식품위생법 및 관련 규정 개선 작업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지만, 앞으로 더욱 개선되어야 할 점도 많다. 이에 월간 한농연 1월호에서는 개정된 식품위생법 및 시행령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1. 음식점 식육(쇠고기) 원산지표시제 도입

올해 1월 1일부터 음식점 식육(쇠고기)에 대한 원산지표시제가 실시된다. 우선 올해는 연면적이 90평(300m²) 이상인 냉동고기(구이용, 샤브샤브, 스테이크)를 취급하는 음식점부터 실시하고, 내년에는 60평(200m²) 이상인 음식점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개정 법률의 주 내용은, 식품접객업자가 식육(쇠고기)을 조리·판매할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그 식육의 원산지 및 종류를 표시토록 하고 있다. 특히 원산지를 표시해야 할 식육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추후 검사기법의 발전 등을 감안해 적용 범위를 쇠고기 외의 고기로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적용대상은 쇠고기부터 우선 시행하는데, 국산은 육우·젖소·한우로 구분 표시하고, 수입산은 수입 국가를 반드시 표기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수입 생우는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 후 유통하는 경우, 팔호 안에 수입국명을 표시한다.

원산지표시 방법은 메뉴판에 기록함을 원칙으로 하되, 요리별?부위별 원산지를 중량당 가격과 함께 표시한다. 국산 또는 외국산 중 한 가지만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따로 표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내산은 ‘등심 국산(한우) ○○g ○○원’ ‘갈비 국산(육우) ○○g ○○원’으로, 외국산은 ‘불고기 미국산 ○○g ○○원’으로 표시하는 방식이다.

특히 개정 법률은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못하도록 규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영업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식육의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농산물품질관리법 등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처벌과 형평성을 고려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영업허가 취소 ·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2. 음식점 쌀 원산지표시제 도입

또한 작년 12월 식품위생법이 개정됨에 따라, 음식점 쌀 원산지표시제도는 2008년 1월 1일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개정 법률의 주 내용은, 식품점객업자가 쌀을 조리 · 판매하는 경우 쌀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계도?홍보 등 준비기간을 고려해 시행 시기는 2008년 1월 1일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쌀의 원산지 표시에 관해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으며, 쌀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3. 농민이 직접 가공 · 제조한 식품과 음식의 약리적 기능 표시 허용

한농연은 2005년 “우리 농업의 근본적 회생을 위한 요구사항”을 발표하여, 농민이 직접 제조하는 가공식품과 농민 식당에서 직접 조리 판매하는 음식에 대한 약리적 효능 표시를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였다. 한농연의 이와 같은 요구사항에 대해 농민단체들이 크게 공감하고 식품위생법 관련 조항의 농민 중심적 개정을 위해 적극 동참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작년 12월 29일, 이같은 한농연의 정책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병원 환자식, 이유식 등에 대해서만 건강유지나 건강증진, 체

력유지 등 신체 기능을 증진하는 데 유효하다는 광고나 표시를 할 수 있었던 것을 모든 식품으로 확대 허용하고, 식품에 함유된 영양 성분의 기능과 작용 등도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비빔밥이나 육계장 등 식당에서 직접 만들어 파는 음식의 경우 어떤 광고를 하든지 허위·과대광고로 제약받지 않는다.

이를 통해 농민들이 자체 제조·판매하는 가공식품과 음식류에 대한 약리적 효능 표시가 가능해짐으로써, 개방화 시대에 대응한 농가소득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문제점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더 험하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와 수입 식용쌀 도입과 중국산 김치 파동 등 농산물 유통 여건이 급변하고 있어, 가급적 빨리 제도를 내실화하고 정착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작년 10월 30일부터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이 재개되었지만, 조사 과정에서 뱃조각이 검출되어 전량 반송되는 등 문제점이 심각한 상태다. 미국 내 작업장의 환경은 불결하고 열악할 뿐만아니라, 대형 쇠톱으로 고기를 절단하기 때문에 뼈와 광우병 위험물질을 꼼꼼히 제거할 수 없다. 더욱이 미국 농무성의 광우병 의심 소에 대한 검사 시스템도 허술하고, 광우병 발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력추적 시스템도 제대로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농협의 핵심 한우 브랜드를 중심으로 하나로마트 판매장에서만 쇠고기 이력추적제 도가 시행 실시되고 있다. 농림부는 2008년부터는 육우, 2009년에는 젖소에 대해 도입하여 국내에서 사육 중인 모든 소에 대해 도입을 완료하고, 종돈과 돼지고기도 이력추적시스템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 제도의 확대를 위해서는 앞으로 막대한 예산과 인력이 소요되며, 전산 시스템도 갖춰야 하는 등 어려움도 많다.

특히 식육(쇠고기) 원산지표시 의무화 대상 음식점의 숫자가 극히 제한적인 것도 문제점이다. 원산지표시 대상 음식점의 규모가 90평(300m^2) 이상으로 한정돼 있어, 실제로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음식점은 국내 전체 60여만개 중 0.46%인 2,800여개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나마도 국거리용 등을 아예 원산지표시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음식점 쌀 원산지표시제도의 정착 또한 어려운 과제다. 작년 농림부 국감에서는 “중국쌀을 국산쌀로 둔갑, 불법유통시키다 적발된 업체의 물량만 760t에 달하며, 적발되지 않은 물량까지 합치면 이보다 몇배 많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인체 유해한 표백제 성분이 있는 중국산 찐쌀이 유통되어, 일부 중국집이나 김밥집 등에서 사용되었다는 지적도 있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대응은 너무나 안이하다. 쇠고기와 마찬가지로 쌀의 원산지표시제를 일반 소형 음식점이나 김밥집 등을 제외한 90평(300m²) 이상인 음식점부터 의무화한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내부 방침이기 때문이다.

5. 개선 방안

전문가들은 우선 식육(쇠고기) 및 쌀의 원산지표시제 대상 음식점을 현실 여건을 감안하여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이력추적시스템의 전면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현재 도축·유통 단계에서만 적용되고 있는 쇠고기의 이력추적시스템을, 생산 단계에서부터 전면 실시해야 한다. 송아지 출산 시점부터 농가가 각종 관련 기록을 유지하고 이를 전산화해서, 광우병 등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력추적시스템을 전면 도입·실시중이었던 일본은 비록 광우병 발생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대한 협상력을 높임으로써 2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수입하도록 관철할 수 있었다. 나아가 일본은 국제수역사무국(OIE)에 자국의 과학적 이력추적시스템을 근거로 제시하며 광우병 관련 수입금지 규정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렇게 해서 일본은 화우(和牛) 생산 농민과 소비자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비판세 장벽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었다.

최근 일부 몰염치한 사업자들이 중국 산동반도에서 중국산 저급 고추와 파프리카 색소를 혼합하여 가짜 고춧가루(다대기)를 만드는 장면이 KBS 스페셜에 방영되어 충격을 준 바 있다. 또한 2005년 여름에는 국내 최대 재벌이 운영하는 대형유통업체가 중국산 김치를 국산 김치인 양 판매하여 파문이 확산된 바 있다.

이 때문에 쇠고기와 쌀 뿐만 아니라 김치 등 반찬류에 대한 원산지표시제의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배추, 무, 고춧가루, 마늘 등 김치 및 반찬의 원료가 되는 농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본격적인 연구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아울러 한농연을 포함한 농민단체와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농산물 명예감시원 제도를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는 농민 생존권 보호 차원뿐만 아니라 소비자 주권을 지키기 위한 핵심 사안이다. 이 때문에 농식품 관련 업무를 중장기적으로는 농림부에서 관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